

[별첨 5]

I . 사이버종합공제사업 보통약관(규칙 제13조 관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합니다)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이 사이버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공제등록의 일반사항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 : 약관에서 규정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며, 피공제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정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지 시, 군, 구
 -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그 외의 출자법인 등
 -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 단체 및 법인
2. 공제등록증권 : 공제등록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회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3. 배상책임 :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4. 제3자 :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5. 사고대응제공자 : 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을 진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예 : 공제회를 포함한 보험회사, 손해사정회사, 기타 데이터복구 및 사고조사업체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합니다.

6.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배액배상금(이에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및 피공제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계약상의 가중책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제3자 배상청구: 피공제자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보상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서면 요구 또는 주장을 말합니다.
8. 대위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9. 공제사고 :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상하는 손해로 기재된 모든 사이버 사고로써 제3자 배상 책임, 데이터복구 손실, 사이버 협박(갈취), 사고 및 침해 대응, 사이버 범죄,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10. 1회의 사고 : 각 약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직전의 사고와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에 의한 사고는 그 발생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1회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11. 공제기간 : 공제등록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2. 영업일 : 공제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13. 보상한도액 : 공제회와 회원 간에 약정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제3자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공제자가 지출한 비용 또는 보험사가 사고대응제공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14. 자기부담금 :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사이버종합공제의 기본담보 및 보통약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 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네트워크 : 연결되어 있거나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2. 컴퓨터 시스템 : 데이터의 생성, 접근, 처리, 보호, 모니터링, 저장, 검색, 표시 또는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시스템(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자 미디어 등)을 말합니다.

3. 기밀정보 : ‘기밀’로 표시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상업적으로 민감한 사업 및 영업 기밀의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4. 통제그룹 :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운영책임자, 최고정보책임자, 최고정보보안책임자, 위험관리자 또는 동등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사이버 범죄 : 피공제자의 은행 계좌에서 외부행위자의 사기적 전자 이체의 직접적인 결과 또는 외부행위자가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상의 데이터를 사기적으로 변경한 결과로 인하여 자금을 도난당하고 해당 금액을 피공제자가 복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6. 사이버 협박(갈취) : 제3자가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사이버 사고를 유발하겠다는 신뢰성 있는 위협 또는 제3자가 야기한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상의 사이버 사고를 종결시키기 위한 제3자의 몸값 요구행위를 말합니다.
7. 사이버 사고 :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악의적 행위(DoS 공격 또는 데이터 도난 포함), 멀웨어, 인적 오류 또는 이와 동일한 합리적인 의심상황을 말합니다.
8. 데이터 : 사용 방식이나 표시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디지털 정보를 의미(텍스트, 숫자, 이미지, 비디오 또는 소프트웨어 등)합니다.
9. 개인정보 :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법률에 의해 정의된 바에 따라, 다른 정보(예: 이름, 식별 번호, 위치데이터, 온라인 식별자 또는 해당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요소)와 관련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10. 데이터 침해 : 피공제자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개인정보 또는 기밀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파괴, 손실, 변경, 허가되지 않은 유출이나 접근으로 발생하는 사생활 권리 침해나 기밀정보 침해상황을 말합니다.
11. 정보주체 :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을 말합니다.
12. 전자매체 : 데이터 기록 및 저장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 기술 장치(외부 드라이브, CD-ROM, DVD-ROM, 자기테이프 또는 디스크, USB 스틱 등)를 말합니다.
13. 직원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고용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고용주 역할을 하는 기관 및 법인의 운영 구조 내에서 기능적 권한 아래에서 근무하는 외부직원이 포함됩니다. 단, 통제그룹의 구성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4. 자회사 : 피공제자가 해당 법인의 이사,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책의 선출, 임명 또는 지명에 대한 현재 투표권을 나타내는 유효한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모든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파트너쉽, 피공제자가 관리 통제를 하거나, 해당 법인의 이사, 신탁인, 관리자 또는 동등한 직책의 50% 이상을 선출, 지명, 임명하거나 직접적으로 통제할 권리를 가진 기간 동안의 모든 합작투자회사를 의미합니다.
15. 전문가 : 보험사 및 사고대응제공자에 의해 임명되거나 사전 승인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 (예:IT 포렌식 조사관, 포렌식 회계사, 변호사 또는 홍보 컨설턴트)을 말합니다.
16. 외부행위자 : 피공제자의 직원이나 통제그룹 구성원이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17. 자금 : 피공제자가 소유하거나 금융기관이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전자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화폐 또는 공식국가통화(브랜드화된 디지털 또는 가상화폐는 화폐나 공식국가 통화로 간주하지 않음)를 말합니다.
18. 하드웨어 : 데이터의 저장, 전송, 처리, 읽기, 수정 또는 제어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 시스템의 물리적 구성요소(전자매체 포함)를 말합니다.
19. 소프트웨어 : 컴퓨터 시스템에 보유되거나 실행되며, 기계판독가능매체에 통합되었을 때 정보처리기능을 가진 기계가 특정 기능, 작업 또는 결과를 나타내거나 수행하거나 달성하게 하는 지시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표준, 맞춤형 또는 개별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응용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0.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 피공제자가 소유, 임대, 라이선스 또는 대여하고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말합니다.
21. 인적 오류 :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 중 직원 또는 통제그룹 구성원이 저지른 부주의한 행위 또는 누락, 그리고 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 중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 직원이 저지른 부주의한 행위 또는 누락(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4호 '일반 조건'의 가록에 명시된 보안의무위반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손실, 비용 또는 배상청구의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2. 기반시설 :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를 지원하는 전자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통신 장비, 공조, 전원 공급 설비, 독립형 발전기, 주파수 인버터 유닛, 변압기 및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23. 인터넷 :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전 세계 공용 데이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24. 인터넷 서비스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인터넷 접속 및 사용/운영을 위한 서비스, 하드웨어 및 기술 장비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 나. 도메인 이름 시스템 서비스 제공업체
 - 다. 인터넷 교환, 1단계 네트워크 제공업체를 담당하는 기타 인터넷 및 외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 라. 케이블 네트워크, 위성 및 무선 통신 네트워크 운영자
25. IT 서비스 : 피공제자의 하드웨어, 기반시설, 전자 데이터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IaaS, PaaS, SaaS와 같은 IT 클라우드 서비스 포함)의 운영, 처리, 유지보수, 보호 또는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단, 통신, 인터넷 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제공업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6. 법률방어비용 : 민사, 상업, 행정 또는 형사방어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비용 및 조사, 법정출석, 검사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모든 비용, 경비 또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단, 급여, 간접비 등의 일반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형사소송 유죄 판결 시 형사방어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7. 도난 : 컴퓨터 시스템에서 기밀정보,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복사하거나 획득하는 모든 악의적 행위를 말합니다.
28. 악의적 행위 :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에 접근, 해를 입히거나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되는 모든 무단 또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29. DoS 공격 : 분산 서비스 공격을 포함하여 과도한 요청 스트림으로 인해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피공제자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전체 또는 일부가 차단되거나, 중단되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되는 악의적 행위를 말합니다.
30. 멀웨어 : 컴퓨터 시스템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해를 입히거나 접근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모든 무단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또는 코드(예: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컴퓨터 웜, 트로이 목마, 루트킷, 랜섬웨어, 키로거, 다이얼러 및 가짜 보안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31. 온라인 미디어 활동 : 피공제자의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모든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를 말합니다.

32. 봄값 : 사이버 협박(갈취) 과정에서 제3자가 요구하는 모든 화폐, 비트코인 또는 다른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33. 규제당국 : 적용 가능한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 또는 처리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모든 감독기관, 독립 공공기관, 규제당국, 정부기관 또는 법정기관을 말합니다.
34. 서비스제공자 : 서면계약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3자를 말합니다.

제2관 공제등록의 성립과 유지

제3조(공제등록) 공제등록은 회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제등록신청과 공제회의 공제 등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4조(약관의 제공) ① 공제회는 공제등록을 신청한 회원에게 약관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회는 홈페이지 등에 약관을 게재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5조(등록의 무효)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공제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공제등록은 무효로 합니다.

제6조(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보장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0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공제등록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하며, 시각은 공제등록증권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릅니다.
② 공제회가 회원으로부터 공제등록 신청을 받고, 그 신청을 공제등록하기 전에 약관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2. 제29조(등록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
3. 제33조(등록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제회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7조(등록의 내용의 변경 등) ① 회원은 공제회와 협의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내용은 문서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등록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회원명, 피공제자
 2. 보상한도액, 공제회비 등 기타 공제등록 내용
- ② 공제회는 회원이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는 감액된 부분은 공제등록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5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8조(조사) ① 공제회는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공제등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회는 공제등록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회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9조(타인을 위한 공제등록) ① 회원은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는 그 타인은 이 공제등록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공제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회원이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제회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설정 대상) 공제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2조(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에 정한 보고연장담보기간을 자동으로 설정하여드립니다.

1. 공제회비 미납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등록이 해지되거나 갱신되지 않았을 경우
2.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으로서 이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 이후의 날짜를 소급담보일자로 하는 등록으로 갱신 또는 대체했을 경우
3. 공제회가 이 공제등록을 배상청구 기준이 아닌 공제등록으로 대체했을 경우

제11조(보고연장담보기간의 보상 특칙) 공제회가 보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 다음의 조항을 추가 적용합니다.

1. 보고연장담보기간 내에 최초로 제기 또는 개시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는 공제기간 만료일에 제기 또는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급담보일자와 공제기간 만료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절차에 한합니다. 보고연장담보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도 보상한도액이 복원 또는 증가되거나 보험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 ①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30일 간
 2.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로부터 90일 간.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공제등록증권상의 소급담보일자로부터 공제기간 만료일(또는 공제등록 해지일) 이후 제1호의 기간 동안에 공제회에 통지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소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보고연장담보기간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업무의 분담) ① 공제회는 사이버종합공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제사고에 대한 업무처리를 손해보험사 또는 손해사정회사에 일임할 수 있습니다.

- ② 손해보험사 및 손해사정회사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손해조사,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사고에 관련된 소송대행 등을 수행합니다.

제14조(공제회비의 요율) 손해배상공제 요율서에서 정한 사이버종합공제 요율을 적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 사이버위험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 : 제3자의 기밀정보 또는 개인정보(피공제자 직원의 개인정보 포함)에 대한 데이터 침해 또는 데이터 보호법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사이버 사고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가.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손상, 변경, 파괴, 무단 접근, 무단 공개
 - 나.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의 서비스 중단 또는 성능 저하
3. 미디어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가. 명예훼손
 - 나. 저작권, 제목, 슬로건, 상표, 상호, 서비스 마크, 서비스 명 또는 도메인 이름의 침해 또는 사생활 권리의 침해 또는 방해
4. 제1항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피공제자 직원이 고용 활동 중에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은 그 행위가 고의나 악의적 의도가 아닌 한, 직원 개인의 법적 책임까지도 포함합니다.
 - 나. 보험사는 공제회의 동의를 받고 발생한 피공제자의 법률방어비용 또한 담보합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공제등록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공제기간 중 사이버위험으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복구 :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공제자가 부담한 데이터 복구 손실(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 직전의 가능한 가장 가까운 상태로 데이터, 소프트웨어,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복원하고 구성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및 경비)

2. 사이버협박(갈취) : 피공제자가 지불한 몸값(보험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한함)과 사이버 협박(갈취)을 해결하기 위해 지불한 협상비용 및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3. 사고 및 침해 대응 : 실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사이버 사고 및 데이터 침해의 결과로 피공제자가 부담한 아래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 가. 사이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한 전문가 비용
 - 나. 사이버 사고를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구성요소(예: 멀웨어 삭제 또는 침해된 사용자 계정 비활성화)를 제거하는 전문가 비용
 - 다. 사이버 사고에 대한 문서화 및 피공제자 보고를 위한 전문가 비용
 - 라. 데이터 침해 발생 후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법규(예: 규제기관 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준수 비용
 - 마. 사내 또는 외부 위기관리센터(전화핫라인 포함) 운영 비용 (공제사고 발생 이후 최초 30일간 피공제자 직원이나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포함)
 - 바. 보험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조건으로, 데이터 침해로 영향을 받는 데이터 주체의 이익을 위해 신용 및 신원 도용 모니터링 서비스 구매 비용
 - 사. 공제사고 발생 이후 평판 보호 기간(60일)이 끝날 때까지 피공제자의 평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 비용
 - 아. 규제당국의 조치에 대응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발생한 법률방어비용(예: 데이터 침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공제자의 규제당국이 부과한 법적으로 보장 가능한 행정적 벌금 및 과징금)

제1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에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공제기간 개시일 또는 그 전에 피공제자가 공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2. 피공제자의 직접적인 운영 및 관리 통제하에 있지 않은 서비스제공자의 기반시설이나 관련 서비스(통신, 인터넷서비스, 위성, 케이블, 전기, 가스 또는 수도 제공업체 등)의 실패, 중단, 성능저하 또는 중지로 생긴 손해

3. 파업, 폭동 또는 소요 및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유해물질, 오염물질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 확산, 침투, 이동, 방출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
5. 정부, 규제당국, 법원 또는 기타 기관의 조치, 요구 또는 명령으로 인한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몰수, 요구, 파괴, 손상, 종료, 사용 불가능으로 생긴 손해
6. 피공제자의 의도적, 악의적 또는 고의적 행위 또는 누락으로 생긴 손해
7. 유형재물 사용손실을 포함하여 모든 결과적 손실 또는 손상
8. 법적 또는 규제적 제재, 금지 또는 제한에 의해 피공제자에게 보험사가 지불, 보장 및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9. 피공제자가 공제사고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당국의 명령, 지시 또는 지침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 비협조하거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0. 모든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과태료. 다만,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제3호 사고 및 침해 대응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유가증권의 판매,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의 처분 불능을 포함한 투자 또는 거래 손실
12. 컴퓨터 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의 예정된 가동중단 시간, 계획된 중단 또는 유류 기간으로 인한 손해
13. 피공제자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만기일까지 납부해야 할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임대, 계약, 라이선스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공급을 위한 주문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14. 신체적 상해, 심리적 해로움(정서적 고통 제외), 트라우마, 질병 또는 사망 손해
15. 지식재산권(예 :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도난, 침해 또는 공개로 인한 손해. 다만, 특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데이터 침해 또는 피공제자의 온라인 미디어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6. 유가증권 또는 통화의 손실, 가치하락 또는 도난, 거래손실 또는 계정가치의 변경 또는 전자자금, 현금 또는 전신송금의 가치를 포함한 자금의 도난. 다만 특별약관 ① 사이버 범죄 담보에 명시적으로 제시된 자금의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7. 코인(예: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IOTA), 토큰(예: EOS, Nem, Tether) 또는 함께 사용되는 공개 또는 비공개 키 등으로 구성된 암호화폐 거래의 손실, 분실, 파괴, 수정, 비가용성, 접근 불가 또는 자연으로 생긴 손해

18. 다음에 열거된 자들에 의해 제기되거나 이들을 대리하여 제기된 제3자 배상청구

- 가. 피공제자에 대한 실효적 통제권을 가진 법인
- 나. 피공제자
- 다.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의 자회사가 실효적 통제권을 가진 법인
- 라. 피공제자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보유한 사람
- 마. 피공제자가 금액에 관계없이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진 법인
- 바. 피공제자가 참여하는 파트너쉽이나 합작투자회사

19. 명시적 계약, 보증, 약속을 위반하거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한 책임으로
생긴 손해(단, 그러한 계약, 합의, 보증, 보장 또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피공제자가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

20.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에게 하청을 준 IT 서비스로 생긴 손해

21.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그 가격의 부정확하거나 부적절 또는 불완전한 설명으로 생긴 손해

22. 제3자를 위한 특혜지급, 재량에 의한 합의 또는 선의의 제스처를 포함하는 할인, 서비스 크레딧,
리베이트, 가격 인하, 쿠폰, 상품, 상금 또는 기타 계약적, 비계약적 인센티브, 프로모션 또는
유인책

23. 공제사고 발생 전의 상태를 넘어서는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의 개선 비용

24. 피공제자가 직접 진술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배상청구 (방어
비용 포함)

25. 고용주-직원 관계, 정책, 관행, 행위 또는 누락, 실제 또는 추정되는 어떤 사람의 고용 거부,
직원에 대한 신체적, 성적 비행을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고용, 조사,
감독, 채용, 교육 또는 직원 유지와 관련된 모든 사항. 단, 이 면책 조항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1호 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 담보의 데이터 침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6. 개인 혹은 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인정하는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파산, 청산,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파산, 청산, 도산으로 인해 대가 지불, 의무 이행,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 면책 조항은 서비스제공자의 파산에도 적용됩니다

제17조(일반 조건) 사이버종합공제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는 각 공제사고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책임은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며,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하위 보상한도 및 총 보상한도액에 한합니다.
2. 피공제자는 다음의 보안 의무를 집니다.
 - 가. 주기적으로 피공제자의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 나.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적절하고 전문적인 안티-멀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하며 자동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 다. 다음의 사항을 적절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사이버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 비밀번호
 - 시스템구성
 - 소프트웨어 패치
 - 방화벽
 - 라. 제조업체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3개월 이내에 업그레이드, 교체 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공제자가 이러한 보안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침해 발생 시 보험사는 어떠한 지급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위의 보안 의무 불이행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공제자가 위의 보안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3. 하나 이상의 담보에 영향을 미치는 공제사고의 경우,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며, 특별약관 ②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담보의 대기기간에도 적용됩니다.
4. 피공제자는 공제기간 동안 피공제자가 인지했거나 합리적으로 인지해야 하는 위험의 중요한 변화를 자체 없이 공제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제회가 그 중요한 위험의 변화에 동의한 경우(단, 추가공제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위험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공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동일한 공제사고에 대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있는 경우, 본 계약은 해당 다른 계약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며 해당 사고에 대해 다른 계약과

분담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장받지 않아야 합니다.

6.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법적 의무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제등록증권의 존재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회는 공개된 날로부터 제15조제2항제2호 사이버 협박(갈취)에 따른 청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해당 담보에 따른 피공제자의 담보를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주소나 기타 합의된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피공제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후에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8. 피공제자는 공제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공제등록증권의 법적 권리나 이해관계를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9. 본 공제등록증권의 변경사항은 당사자 간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합니다.
10. 본 공제등록증권의 어떤 조항이 본 공제등록증권이 적용되는 어떠한 관할 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공제회와 피공제자는 법률 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본 공제등록증권을 변경해야 합니다.
11. 본 공제등록증권의 어떤 조항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밝혀지는 경우, 공제회와 피공제자는 공제등록증권의 다른 모든 조항이 충분한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며 실행 불가능한 해당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합니다. 본 공제등록증권의 쌍방은 해당 무효 조항을 합의 목적에 최대한 가까우며,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유효 조항으로 교체 합니다.
12. 본 공제등록증권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본 공제등록증권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1.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거나 법률상 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또는 손해배상청구나 법률상 배상책임에 대한 소송의 제기가 우려되는 상황
2. 본 공제등록증권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침해, 사이버 사고, 사이버 협박(갈취), 사이버범죄 등 공제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

② 피공제자는 손해발생과 통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집니다.

1. 공제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공제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결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2. 공제사고의 지속 기간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공제사고의 원인과 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고 허용해야 합니다.
4.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를 보존하고 이를 보험사 또는 사고대응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5. 발생한 모든 비용, 경비 또는 총이익 감소에 대한 상세한 계산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요구 가능한 보고서, 재무제표, 청구서, 송장 또는 기타 문서와 같은 서면증거를 제시하고 보험사의 조사에 필요한 모든 협력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6. 보험사나 사고대응제공자가 제시한 모든 합리적인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제3자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험사의 권리 및 피공제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해 제기된 담보되는 제3자 배상청구를 방어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습니다(피공제자에 대해 시작된 어떠한 법적 절차의 방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보험사가 피공제자를 방어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에 대해 피공제자와 협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변호사를 임명하고 방어를 조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2. 보험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배상청구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지불하거나, 합의하거나, 어떤 의무를 가정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거나, 법적 절차 진행 중에 어떤 합의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3. 보험사가 제3자 배상청구에 대해 조사, 방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제3자 배상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보험사가 임명한 변호사나 기타 전문가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피공제자는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기부담금을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직접 제3자에게 보상을 제공한 경우, 피공제자는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④ 보험사가 요청할 경우, 피공제자는 아래와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1. 정보 제공과 피공제자가 고용한 증인의 법정 출석 및 협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필요 시 보험사와 협력하고 지원하여야 합니다.

2. 사이버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해 피공제자 또는 보험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를 집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공제자의 이름으로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보험사에 부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3. 본 공제등록증권에 따른 보험사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가 요구하는 모든 문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공제회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2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보험사는 제1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영업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보험사는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금 및 비용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각호의 손실 및 비용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당 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당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3. 특별약관에 의한 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당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당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때 제18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공제등록의 공제기간 중에 보험금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 액에 포함합니다.

제22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공제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다른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2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각호의 손해배상금은 위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②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제24조(보험금의 분담) 동일한 공제사고에 대해 이 공제등록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본 공제등록증권은 해당 다른 계약을 초과하는 부분을 담보하며 해당 공제사고에 대해 다른 계약과 분담하지 않습니다. 피공제자는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당금을 별도의 계약으로 보장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25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2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자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7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보험사는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사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보험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28조(대위권) 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보험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보험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회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4관 공제등록 전 알릴 의무 등

제29조(등록 전 알릴 의무)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등록 시 때 공제회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등록 후 알릴 의무) ① 공제등록 이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회원이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공제회에 알리고 공제등록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공제등록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또는 공제)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회비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비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제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공제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공제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1조(양도) 공제 목적의 양도는 공제회의 서면동의 없이는 공제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공제회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공제회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제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공제등록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사기에 의한 등록)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등록이 성립되었음을 공제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등록의 해지 및 공제회비의 환급 등

제33조(등록의 해지) ① 회원은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등록의 경우에는 회원은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등록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는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종합공제 등록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9조(등록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30조(등록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등록 후 알릴 의무를 회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회는 등록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공제회가 등록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공제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공제회비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⑤ 제3항에 의한 등록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제회 및 보험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공제회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등록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제등록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공제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 시킨 경우
 2.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공제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해지한 경우 공제회는 그 취지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제35조(공제회비의 환급)에 따라 공제회비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공제회비의 환급) ① 공제회는 본 공제등록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회비를 돌려드립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회비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
2.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공제회비를 뺀 잔액. 다만, 회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회비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제2호에서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공제회가 제32조(사기에 의한 등록), 제33조(등록의 해지) 또는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등록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제6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관할법원) 본 공제등록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와 회원 또는 피공제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공제회비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회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공제회 및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회원이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공제회 및 보험사는 이 공제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공제등록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회는 이 공제의 등록,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회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제회 및 보험사는 공제등록 및 사고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본 공제등록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II . 사이버종합공제 특별약관

① 사이버범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사이버 범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불법적으로 피공제자로부터 탈취된 자금에 대해서 공제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② 지방공공기관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사이버 사고로 인해 피공제자(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 시스템 서비스의 전체적 또는 부분적인 이용 불가능 또는 성능 저하가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담보 기간 동안 발생한 피공제자의 총이익손실 및 손해경감비용을 제2조(보상기준)에 따라 공제 등록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기준)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매출 감소에 의한, 및 손해경감비용에 의한 총이익의 손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감소의 경우, 담보기간 동안의 매출이 표준 매출액보다 부족한 차액에 총이익률을 적용해 산출된 액수입니다.
2. 손해경감비용의 경우, 이 추가비용이 없다면 공제사고에 따른 담보기간 동안 발생했을 매출 감소를 피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라 필연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지만, 그로 인해 피할 수 있는 감소액에 총이익률을 적용해 산출되는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3. 공제사고로 말미암아 중단되거나 감소된 총 수익에서 지불 가능한 피공제자의 사업활동의 해당 요금 및 비용의 경우 담보기간 동안 절약된 합계를 제외합니다.
4. 기초재고의 액수를 초과하는 기말재고의 액수를 제외합니다.
5. 손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완제품의 축적 재고로부터 매출이 일시적으로 유지되어 공제사고로 인한 매출 부족이 미뤄질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고, 허용합니다.
6. 보험사는 담보기간 동안에 겪은 총이익의 손해에 대해서만 피공제자에게 보상합니다.
7. 만약 담보기간 동안에, 피공제자나 그 대리자에 의해서 피공제자의 사업 활동을 위해서 다른 장소에서 상품이 팔릴 수 있거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 그러한 판매 또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었거나 지급 가능한 돈은 담보기간 동안 매출 감소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8. 매 공제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담보기간 동안 입은 총이익 손해의 시간당 평균값을 공제등록증권 상에 대기기간으로 명시된 시간 수로 곱해서 얻어지는 금액 또는 공제등록증권 상에 명시된 금전적 자기부담금 두 수치 중에서 액수가 높은 쪽에 대해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9. 대기기간은 공제사고 발생 이후 12시간이며, 대기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사이버종합공제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특별약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 피공제자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되고 배달된 상품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지불 되었거나 지불될 수 있는(허용된 할인은 제외) 금액을 의미하며 특정변동비를 제외합니다.
2. 총이익률 : 공제사고 발생일 직전 회계연도 동안 매출액에 대해 발생한 총 이익률로, 사업 동향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또는 기타 상황을 반영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공제사고 발생 전후의 상황 또는 공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피공제자의 사업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된 수치는 공제사고가 없었더라면 공제사고 발생 후의 기간 동안 달성되었을 결과를 최대한 정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3. 매출감소 : 담보기간 동안의 매출이 표준 매출액보다 부족한 차액에 총 이익률을 적용해 산출된 액수를 말합니다.
4. 특정변동비 :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 운반, 중간저장, 매출세 및 기타세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5. 표준 매출액 : 공제사고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의 담보기간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며, 공제사고 발생일 직전 12개월 동안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사업동향, 변동 또는 기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조정된 수치는 피공제자의 사업활동이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결과를 최대한 가깝게 나타내도록 해야합니다.
6. 기초재고 : 담보기간이 시작될 때 피공제자의 사업활동을 위해 보유한 피공제자의 재고를 의미하며, 완제품, 원자재 및 반제품과 상품을 포함하고, 특정변동비를 제외합니다.
7. 기말재고 : 담보기간의 말에 피공제자의 사업활동을 위해 피공제자의 남아있는 재고를 의미하며, 완제품, 원자재 및 반제품과 상품을 포함하고, 특정변동비는 제외합니다.
8. 총이익 : 매출값과 기말재고 값에서 기초재고 값을 뺀 액수를 의미하며 기초재고와 기말 재고의 값은 피공제자의 일반 회계법에 따라 계산하지만,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9. 손해경감비용 : 공제사고에 따른 담보기간 동안 발생했을 매출의 감소를 피하거나 완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한 필연적이고 합리적인 추가비용을 말합니다.(단, 그 비용은 그로 인해 경감된 매출 감소액에 총 이익률을 적용해 산출되는 합계를 넘지 않습니다.)
10. 담보기간 : 피공제자의 사업이 중단되는 기간으로,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작되고 피공제자의 컴퓨터 시스템과 데이터가 완전히 복구되고 총이익이 피공제자 사업 중단 이전 수준에 도달하는 날짜에 끝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 최대 기업휴지 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11. 대기기간: 이 공제등록증권이 작동되기 전에 경과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은 공제사고의 발견으로 인해 피공제자의 컴퓨터시스템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12. 최대 기업휴지 담보기간 : 기업휴지 담보의 최대 담보기간(90일)을 말합니다.

III. 사이버종합공제 추가특별약관

① 전쟁, 사이버 전쟁 및 사이버 작전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LMA5564A)

1. 이 공제등록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추가특별약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손해, 손상, 책임, 비용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손해
- 나. 사이버 작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2. 사이버 작전이 특정 국가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보험자와 보험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는 사이버 작전에 영향을 받은 컴퓨터 시스템이 소재한 국가의 정부가 해당 사이버 작전을 다른 국가 또는 그 지시, 통제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정하거나 주체를 규명하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본 추가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컴퓨터 시스템 : 모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 시스템, 전자장치(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등을 포함합니다),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와 유사한 시스템 또는 조합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출력 장치, 데이터 저장 장치, 네트워크 장비, 백업 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본 추가특별약관의 컴퓨터 시스템의 정의와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정의가 상충하는 경우,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의 정의를 우선하여 따릅니다.

나. 사이버 작전 : 국가가 직접, 또는 그 지시에 따라, 또는 그 통제하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을 방해·접속 차단·저하시키는 행위
- 컴퓨터 시스템 내 정보를 복제·제거·조작·접근 차단 또는 파괴하는 행위

다. 국가 : 주권국가를 말합니다.

라. 전쟁 : 물리적 무력을 수반하는 무력 충돌을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 국가 간의 무력 충돌

- 내전, 반란, 혁명, 폭동, 군사행동 또는 권력 찬탈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무력 충돌 전쟁은 선전포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② 개인정보 배상책임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1호 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 및 제1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 및 제10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피공제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1.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2항에 따른 배액배상금 및 동법 제43조의 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배액배상금 및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금 단, 피공제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2호 및 제3호에 한하여 피공제자가 파산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사는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미지급액과 보상한도액 중 작은 액수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4. 이 추가특별약관에만 적용할 목적으로, 다음 정의가 공제등록증권에 추가됩니다.
 - 가. 피공제자 : 피공제기관 및 그 임원 또는 직원
 - 나. 피공제자 : 피공제기관 및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③ 서류손실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1호 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에 아래의 내용을 가록으로 추가합니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제1호 정보유지위반 및 개인정보배상책임

가. 제1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공제자 또는 피공제자가 보관을 위탁한 사람의 보관 종이거나 어느 곳에서든 운송 중에 발생한 피공제자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문서의 분실, 사용불능, 손상, 또는 파괴 때문에 제기된 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단, 마모, 점진적인 열화, 나방 및 해충에 기인한 문서의 분실, 사용불능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감염병 면책 추가특별약관

1. 본 공제등록 상 반대되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공제회 및 손해보험사에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비용, 일반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공제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됩니다.
2. 본 공제등록증권상에서 사용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는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3.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4.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5.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⑤ 제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보험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담보,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가.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나.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⑥ 교차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어느 피공제자가 다른 피공제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공제등록증권은 각 피공제자에게 별도 등록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공제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단, 복수의 피공제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이버종합공제 등록신청서

□ 회원 기본정보

회원명		대표자명	
소재지			
홈페이지			

작성자		소속 부서	
연락처	Tel.	E-mail.	
가입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주민등록기준 인구수	명	정원 현황 (임직원/공무원/공무직/기간제 합산)	명
직년전도 세입(매출액)	원	개인정보 보유 수	개
활당된 IP 주소 총 개수	개	소유·전용하는 서버 대수	대
활성 중인 IP주소 총 개수	개	대표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 수	건

□ 등록조건

총 보상한도	<input type="checkbox"/> 10억 <input type="checkbox"/> 15억 <input type="checkbox"/> 20억 <input type="checkbox"/> 30억 <input type="checkbox"/> 50억 <input type="checkbox"/> 100억
공제 담보지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 세계
자기 부담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0만원(사고당, 변경불가)
담보범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유지 위반 및 개인정보 배상책임 (문서분실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디어노출 배상책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데이터자산 손실복구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이버협박(갈취) 대응 및 몸값(ransom)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고침해 및 대응 비용 (파징금 및 평판관리비용 포함, 총 보상한도액의 30%)
특별담보	<input type="checkbox"/> 사이버범죄 탈취자금 보상 비용 (총 보상한도액의 30%) <input type="checkbox"/> 기업휴지/간접기업휴지 손실 비용

□ 사이버위험 및 대응체계 진단 관련 점검표

공제가입 회원의 정확한 사이버 위험 진단과 향후 수준별 컨설팅·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보안 내부관리계획 또는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	답변	
1. (근거법령에 따른) 운영 중인 정보보안 내부관리계획 혹은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있나요? (있다면 “예”,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내부관리계획	<input type="checkbox"/> 기본지침
1-1. 정보보호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접근 권한 및 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 악성프로그램 등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개인정보의 유출·도난 방지 등을 위한 암호화 및 취약점 점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7. 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8.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이버 침해 대응 훈련을 시행하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예”라고 답하셨다면 얼마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매 달	<input type="checkbox"/> 매 분기
	<input type="checkbox"/> 매 반기	<input type="checkbox"/> 매 년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2-2. “예”라고 답하셨다면 어떤 침해 대응 훈련을 시행하나요?	<input type="checkbox"/> 모의해킹 <input type="checkbox"/> 악성코드 피싱훈련 <input type="checkbox"/> 상황설정 모의훈련 <input type="checkbox"/> 테이블탑(Tabletop)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기타 :

3. 지난 3년간, 어떤 컴퓨터나 네트워크 공격(랜섬웨어 공격 포함)으로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나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예”라고 답하셨다면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input type="checkbox"/> 랜섬웨어 <input type="checkbox"/> 악성코드 <input type="checkbox"/> 사회공학사기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탈취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

※ 참고(근거법령) ▶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정보보안 기본업무, 조직, 책임자 지정 등) 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작성 확인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제출)일		작성 부서	
작성자		서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이버종합공제 사고접수양식